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
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3.

발 의 자 : 최수진·구자근·성일종
이상휘·신성범·박덕흠
김민전·이인선·고동진
박준태·김선교·김용태
박정훈·김재섭·이주영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
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
하고,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
구회에 이사장,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
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체
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
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충분히 반영되
기 어렵고,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구
조 또한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연구자협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).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
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원장으로”를 “원장 및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자협의회 대표자로”로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연구자협의회) ① 연구기관 소속 연구직 직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기획평가위원회 등) ① (생 략)	제25조(기획평가위원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 여 연구회에 이사장·이사와 연구기관의 <u>원장으로</u>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원장 및 제25조의2</u> <u>제1항에 따른 연구자협의회의</u> <u>대표자로</u> ----- -----.
③·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③·④ (현행과 같음) <u>제25조의2(연구자협의회) ① 연구</u> <u>기관 소속 연구직 직원에 대한</u> <u>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</u> <u>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</u> <u>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</u> <u>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</u> <u>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자협의회의</u> <u>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</u> <u>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u>